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3월 8일
-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0일

3. 제안사유

-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(매년1조원, 10년)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하여 관리·운용하도록 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에 따라,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합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2022년 1월부터 2단계 재정분권 합의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(안 제1조, 안 제5조제1항제5호)
- 지방소멸기금의 광역·기초지원계정 구분(안 제16조)
-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른 관련 부처 및 인원수 변경.
(안 제6조제2항, 안 제12조제1항, 안 제18조제3항)
 - (기존) 20명(조합원의 발전기금 총괄 업무담당 실·국장,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국장, 지방재정 전문가 2인)
 - (변경) 23명[기존(20인)+3인(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, 균형발전전문가 2인)]
-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(투자계획 수립, 투자협약체결, 심의위원회 운영 등)
(안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신설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덕항)

가. 제출배경

- 지역상생발전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7조에 따라 설치하고, 이를 관리·활용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176조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설립함. (17개 시·도 합의)

□ 기금 개요

- 설치목적 :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기금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·활용
- 설치년도 : 2010년 5월 7일
- 조합구성 : 20명 (17개 시·도 기획조정실장,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, 전문가 2인)
- 주요내용

구 분	재 원	용 도
재정지원계정	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출연금 1/2 (출연: 수도권 잔여분 지방소비세의 35%)	▶ 지역발전·지역상생을 위한 지자체 재정 지원, 보조사업지원 ▶ 발전기금 관리·운영경비 등
용자관리계정	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출연금 1/2 (출연: 수도권 잔여분 지방소비세의 35%)	▶ 시도(시군포함) 용자(사업개발 지방채 치환 등) ※ 2년거치 8년균등상환, 기준금리+0.25%
전환사업보전계정 (20~26)	지방소비세 중 정액분 ※ 지방기금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 ※※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제4호 가목	▶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비용 보전 ※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관련 별표

-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(매년1조원, 10년)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하여 관리·운용하도록 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개정(시행 2022. 1. 1.) 되었음.
- 이에 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규약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76조제1항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, 시·도의 경우에는

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18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음.

- 이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서면회의(안전 부의일: 2022. 2. 9.)를 거쳐 17개 시·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※ 제57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임시회의('22.2.18.)에서 전원찬성으로 개정안 확정

나.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

- 본 규약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(시행 2022. 1. 1.)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기존 운용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관련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합의 규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1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, 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2조에 따라 “지방소멸대응기금”의 관리·운용을 조합의 목적에 규정하였음.
- 이는 2022년 1월부터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22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시·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**지방소멸대응기금**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·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(이하 “기금관리조합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·운용한다.

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안 제5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라 기존의 지역상생발전 기금에 국한된 “발전기금”을 “조합이 관리하는 기금”으로 변경한 것임.

※ 해당조항 : 안 제5조제1항제1호·제6호·제8호·제9호, 안 제8조제1항제5호, 안 제13조 제1항 및 제3항, 안 제14조제2항, 안 제15조, 안 제16조, 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, 안 제37조

- 안 제6조(조합회의의 구성), 안 제12조(실무협의회), 안 제18조(결산)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라 조합회의 구성을 확대*하고 그에 따라 실무협의회 구성원을 보완한 것임

* 조합회의 구성 확대(20명→23명 /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 및 균형발전전문가 2명)

- 안 제16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임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25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)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 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.

- 안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, 제23조, 제25조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임.

- 안 제36조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8조에 따른 것임.

- 안 제38조는 조합의 해산에 관한 것으로,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법 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.

- 본 규약안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써,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것으로 **절차상 문제가 없고**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·기초지원 계정 신설을 규정한 것으로 **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** 판단됨.